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 제 96 호 2018년5월21일(월)	<h1 style="margin: 0;">여 수 시 보</h1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 정 방 침</p> <p>1. 함께하는 소통시정 1. 활력있는 지역경제 1. 수준높은 교육복지 1. 앞서가는 해양관광 1. 걱정없는 안전사회</p>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		

목 차

【공 고】

- 여수시 공고 제2018-1229호 도로지정 공고[돌산읍 우두리 108-1] /3
- 여수시 공고 제2018-1243호 도로지정 공고[돌산읍 둔전리 243-1] /4
- 여수시 공고 제2018-1255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 공고 /5
- 여수시 공고 제2018-1260호 도로지정 공고(화양면 용주리 225-1번지 외 1필지(225-3)) /9
- 여수시 공고 제2018-126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/10
- 여수시 공고 제2018-1267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/11
- 여수시 공고 제2018-1268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/16
- 여수시 공고 제2018-1270호 2018년 여수형 마을기업 재공모 공고 /21

회								
람								

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8-1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 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계		44m	4m	183m ²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돌산읍 우두리	108-1 번지	44m	4m	183m ²	“	
이 하 빈 칸					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
(061-659-4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5. 21.

여 수 시 장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243-1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 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계		27.1m	1.76m	24m ²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돌산읍 둔전리	243-1 번지	13.1m	0.76m	10m ²	“	
		14m	1m	14m ²	“	
이 하 빈 칸					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
(061-659-4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5. 21.

여 수 시 장

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 공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문수주택단지 내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 등)사업의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의 출입을 공고합니다.

1. 사업의 종류: 문수주택단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 등)사업
2. 사업시행자: 여수시장
3. 출입목적: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조사
4. 출 입 자: 사업시행 공무원, 설계 용역 관계자, 감정평가사
5. 출입할 토지의 구역: 여수시 문수동 67-1 번지 등 96필지(붙임 조서)
6. 출입기간: 2018. 5.23. ~ 2018.12.30.(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(住居)나 경계표·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)
7.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사업 ☎ 659-4561, 보상 ☎ 659-400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5.21.

여 수 시 장

토 지 조 서

구분	동 명	지번 및 지목	대장면적(m ²)	비고
1	여수시 문수동	67-1대	125.5	1단계구간
2	여수시 문수동	67-2대	91.3	"
3	여수시 문수동	67-3대	91.3	"
4	여수시 문수동	67-4대	91.5	"
5	여수시 문수동	67-5대	91.5	"
6	여수시 문수동	67-6대	91.6	"
7	여수시 문수동	67-7대	91.5	"
8	여수시 문수동	67-8대	91.7	"
9	여수시 문수동	67-9대	91.7	"
10	여수시 문수동	67-10대	239.4	"
11	여수시 문수동	69-1대	127.7	"
12	여수시 문수동	69-2대	102.9	"
13	여수시 문수동	69-3대	102.8	"
14	여수시 문수동	69-4대	102.5	"
15	여수시 문수동	69-5대	102.4	"
16	여수시 문수동	69-6대	102.1	"
17	여수시 문수동	69-7대	102	"
18	여수시 문수동	69-8대	101.7	"
19	여수시 문수동	69-9대	101.6	"
20	여수시 문수동	69-10대	101.4	"
21	여수시 문수동	69-11대	101.1	"
22	여수시 문수동	69-12대	101	"
23	여수시 문수동	69-13대	100.8	"
24	여수시 문수동	69-14대	100.6	"
25	여수시 문수동	69-15대	100.3	"
26	여수시 문수동	69-16대	129.6	"
27	여수시 문수동	74-1대	168.2	"
28	여수시 문수동	74-2대	90.9	"
29	여수시 문수동	74-3대	90.7	"
30	여수시 문수동	74-4대	91	"

31	여수시 문수동	74-5대	90.9	"
32	여수시 문수동	74-6대	91	"
33	여수시 문수동	74-7대	90.9	"
34	여수시 문수동	74-8대	90.9	"
35	여수시 문수동	74-9대	91	"
36	여수시 문수동	74-10대	90.9	"
37	여수시 문수동	74-11대	91	"
38	여수시 문수동	74-12대	91	"
39	여수시 문수동	74-13대	90.9	"
40	여수시 문수동	74-14대	91.1	"
41	여수시 문수동	74-15대	91.1	"
42	여수시 문수동	74-16대	170.8	"
43	여수시 문수동	82-6대	330	"
44	여수시 문수동	85-1대	99.9	"
45	여수시 문수동	85-2대	100	"
46	여수시 문수동	85-3대	100.1	"
47	여수시 문수동	85-4대	100.2	"
48	여수시 문수동	85-5대	100.2	"
49	여수시 문수동	85-6대	100.2	"
50	여수시 문수동	85-7대	100.2	"
51	여수시 문수동	85-8대	100.3	"
52	여수시 문수동	85-9대	100.3	"
53	여수시 문수동	85-10대	100.3	"
54	여수시 문수동	85-11대	187	"
55	여수시 문수동	85-12대	128.9	"
56	여수시 문수동	52-7대	98	2,3단계구간
57	여수시 문수동	53-8대	205.3	"
58	여수시 문수동	53-9대	205.2	"
59	여수시 문수동	53-10대	204.9	"
60	여수시 문수동	58-8대	90.7	"
61	여수시 문수동	58-18대	128.5	"
62	여수시 문수동	58-29대	90.7	"
63	여수시 문수동	59-8대	90.5	"

64	여수시 문수동	59-18대	111.3	"
65	여수시 문수동	59-19대	111.6	"
66	여수시 문수동	59-29대	90.5	"
67	여수시 문수동	65-1대	192.3	"
68	여수시 문수동	65-2대	129.7	"
69	여수시 문수동	65-4대	191.8	"
70	여수시 문수동	65-5대	122	"
71	여수시 문수동	65-6대	131.9	"
72	여수시 문수동	68-2대	100.7	"
73	여수시 문수동	68-3대	100.1	"
74	여수시 문수동	68-4대	107.1	"
75	여수시 문수동	68-5대	118.7	"
76	여수시 문수동	68-6대	115.8	"
77	여수시 문수동	68-7대	100	"
78	여수시 문수동	68-8대	100	"
79	여수시 문수동	68-9대	100	"
80	여수시 문수동	68-10대	100	"
81	여수시 문수동	68-11대	99.9	"
82	여수시 문수동	72-1대	99.3	"
83	여수시 문수동	73-2대	91.3	"
84	여수시 문수동	73-8대	91.2	"
85	여수시 문수동	73-9대	91.2	"
86	여수시 문수동	73-24대	91.1	"
87	여수시 문수동	73-25대	91.2	"
88	여수시 문수동	75-9대	90.9	"
89	여수시 문수동	75-21대	90.9	"
90	여수시 문수동	76-8대	90.6	"
91	여수시 문수동	76-25대	90.6	"
92	여수시 문수동	69-17대	129.7	"
93	여수시 문수동	69-25대	99.8	"
94	여수시 문수동	69-26대	99.8	"
95	여수시 문수동	74-24대	91	"
96	여수시 문수동	74-25대	91	"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225-3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계		4m	m	798㎡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화양면 용주리	225-1	30m	4~8m	181㎡	“	
화양면 용주리	225-3	115m	4~8m	617㎡	“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5. 21.

여 수 시 장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

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(영업소폐쇄) 예정사항을 공고 합니다.

2018. 5. 21.

여 수 시 장

1. 제 목 : 식품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
2. 공고기간 : 2018. 05. 21. ~ 2018. 06. 04. (15일간)
3. 관련법규 :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4.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 : 2018. 6. 5.
5.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

업종	업 소 명 (영업주)	영업소 소재지	위반내용	행정처분	비고
식품제조 가공업	우리식품 (배*숙)	여수시 화산로 42-1(화장동)	사업자폐업 (2017.12.31.)	직 권 말 소	

6. 고지사항
 - 행정처분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(심판 청구의 기간)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 우리시 또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 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20조(제소기간)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7. 문의사항 : 여수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김슬호(☎ 061-659-4232)

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

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공고합니다.

2018. 5. 21.

여 수 시 장

1. 지정번호 :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제2018-5호
2. 지정 위치·구역 및 면적

위 치	지점	위도	경도	면 적
전남 여수시 묘도동지선	가	34° 51' 55.410"	127° 39' 07.110"	264ha
	나	34° 52' 44.853"	127° 40' 10.301"	
	다	34° 52' 01.754"	127° 41' 01.847"	
	라	34° 51' 47.647"	127° 39' 45.747"	
	마	34° 51' 44.480"	127° 39' 17.570"	

3. 수산자원의 종류 : 새조개
4. 관리수면의 관리자 : 여수시장
5. 어선·어구의 종류 및 수 : 양식장형망선 6척
6.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: 2018. 5. 23.~2018. 5. 31.
7. 채취량 : 새조개 146.33톤 이하
8. 준수사항 및 제한조건 : 붙임 지정내용 및 조건 참조

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내용 및 조건

□ 지정내용

- 지정장소 : 여수시 묘도동지선(264ha)
 - 붙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참조
- 지정기간 : 2018. 5. 23.~2018. 5. 31.
- 포획량 : 새조개 264톤 이하
- 포획·채취 방법 : 양식장형망선 6척
- 포획·채취 어업인 : 여수시 관리수면관리위원회 사전승인 받은 자

□ 지정조건

-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·이용자는 지정내용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.
-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자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정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.
- 지정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,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.
-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자는 제 3자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, 어업분쟁을 해소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·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한 다음의 협의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.

- 여수시는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시행, 보상청구 금지, 어업 분쟁 자체 해결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
-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준설사업(2018. 3.~2018. 12.)의 준설토 배사관 사업에 따른 피해발생시 어떠한 민원 및 보상도 요구할 수 없음
-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상 필요하거나 협의 조건을 위반시 여수시에서는 본 승인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배상 요구를 할 수 없음
- 동 수산자원관리수면은 항로와 부두가 인접하고 있어 채취선이 항로를 회단하거나 채취 중 항로를 침범하여 선박, 역무선, 해상장비(준설선, 토운선, 예선 등)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, 작업시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 이탈을 방지하고, 통항선박과 교신이 가능한 감시선과 안전지도선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항계수역을 통항하는 대형선박의 항주파에 따른 소형선박 전복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함
-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분쟁은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자인 여수시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
- 채취 작업 전에 어선명단, 작업일정, 비상연락망 등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
- 안전지도선은 선박식별을 위한 자동식별장치(AIS) 및 교신을 위한 무선통신장비(VHF)를 설치하고 VHF CH67를 상시 청수하여 여수

항해상교통관제센터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, 항로횡단 또는
작업 선박이동시에는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유선(061-840-2552)
또는 무선(VHF CH67)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

- 야간(일몰 후~일출 전)에는 채취 어선 등 관련 선박의 항행을 절대 금하여야 함
 - 어로구역 및 작업선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고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함
 - 협의구역에서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행위 시 이미 설치된 항로
표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동 해역에서 통항선박의
안전 확보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산자원
관리 해역에 항로표지시설(형상, 등색, 등질 등을 주변 국유표
지와 다르게 설치)을 설치하여야 함
 -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, 여수해양경찰서 등
관계기관에 통하여야 함
 - 광양만의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 채취 작업시
불가사리 퇴치·제거도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위원회를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
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(각종 서류의 작성·비치 등)와
제42조제2항를 준수하여야 한다.
 - 여수시에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사항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,
여수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인근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수면의 위치와 구역도

묘도지역 발전 협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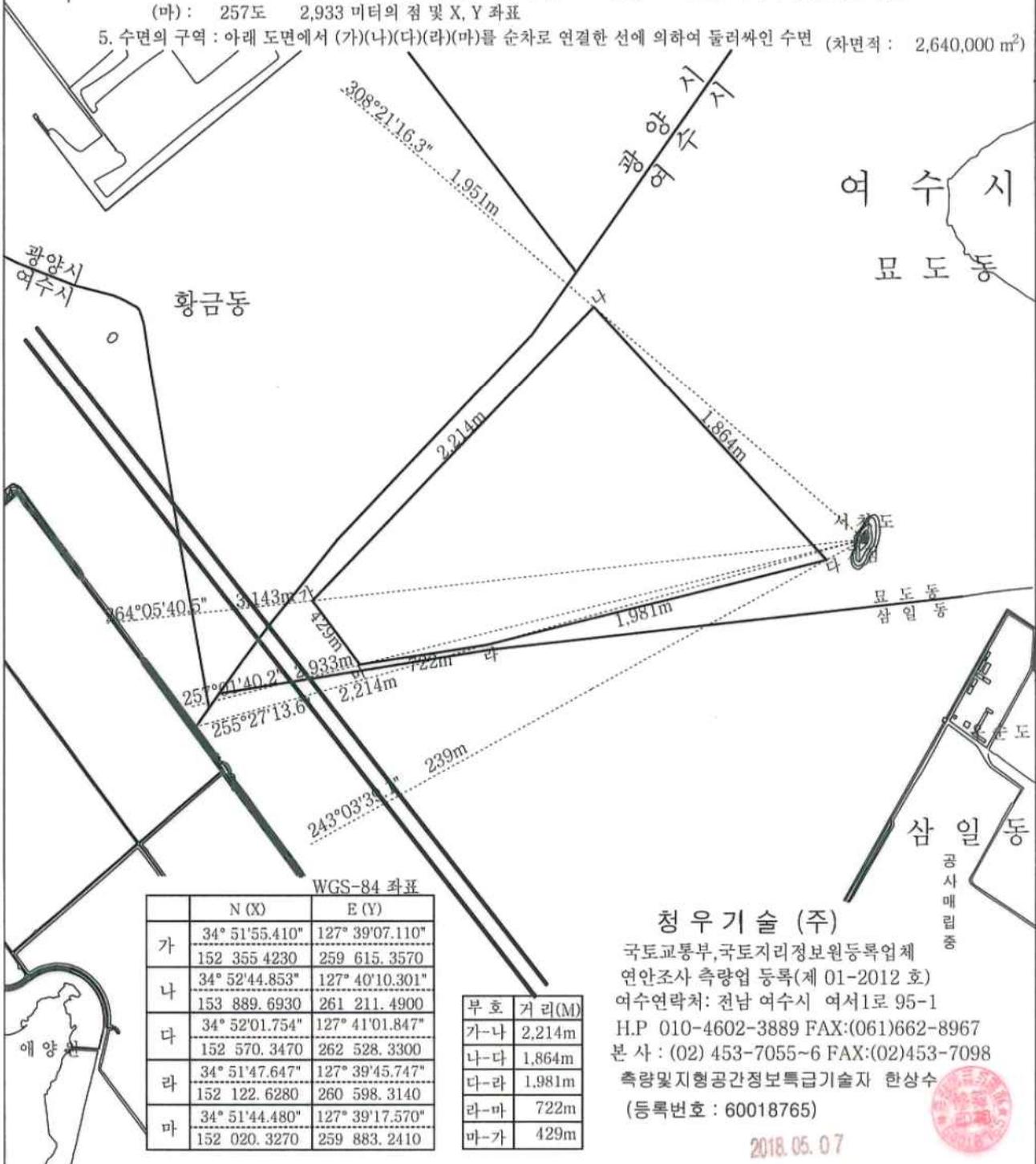
전남여수시 수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 제 호

축척 : 1/25,000



1. 어업의 종류 : 수산자원 관리수면
2. 어업 방법 : 바닥식(패류)형망, 잠수기
3. 수면의 위치 :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묘도 지선
4. 기점 및 각점 :
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: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묘도 서치도 (X=152 678. 8030 Y=262 741. 7470)
 육상기점(여수시 묘도동 묘도 서치도 (X=152 678. 8030 Y=262 741. 7470)
 (가) : 264도 3,143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 (나) : 308도 1,951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
 (다) : 243도 239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 (라) : 255도 2,214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
 (마) : 257도 2,933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

5. 수면의 구역 : 아래 도면에서 (가)(나)(다)(라)(마)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(차면적 : 2,640,000 m²)



WGS-84 좌표

	N (X)	E (Y)
가	34° 51'55.410"	127° 39'07.110"
	152 355 4230	259 615. 3570
나	34° 52'44.853"	127° 40'10.301"
	153 889. 6930	261 211. 4900
다	34° 52'01.754"	127° 41'01.847"
	152 570. 3470	262 528. 3300
라	34° 51'47.647"	127° 39'45.747"
	152 122. 6280	260 598. 3140
마	34° 51'44.480"	127° 39'17.570"
	152 020. 3270	259 883. 2410

부호	거리(M)
가-나	2,214m
나-다	1,864m
다-라	1,981m
라-마	722m
마-가	429m

청우기술 (주)
 국토교통부,국토지리정보원등록업체
 연안조사 측량업 등록(제 01-2012 호)
 여수연락처: 전남 여수시 여서1로 95-1
 H.P 010-4602-3889 FAX:(061)662-8967
 본 사 : (02) 453-7055~6 FAX:(02)453-7098
 측량및지형공간정보특급기술자 한상수
 (등록번호 : 60018765)

2018.05.07



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

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공고합니다.

2018. 5. 21.

여 수 시 장

1. 지정번호 :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제2018-6호
2. 지정 위치·구역 및 면적

위 치	지점	위도	경도	면 적
전남 여수시 울촌지선	가	34° 51' 55.350"	127° 38' 33.000"	5.44ha
	나	34° 51' 46.200"	127° 38' 41.750"	
	다	34° 51' 41.209"	127° 38' 42.945"	
	라	34° 51' 40.620"	127° 38' 39.075"	

3. 수산자원의 종류 : 새조개
4. 관리수면의 관리자 : 여수시장
5. 어선·어구의 종류 및 수 : 양식장형망선 6척
6.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: 2018. 5. 23.~2018. 5. 31.
7. 채취량 : 새조개 13.87톤 이하
8. 준수사항 및 제한조건 : 붙임 지정내용 및 조건 참조

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내용 및 조건

□ 지정내용

- 지정장소 : 여수시 율촌지선(5.44ha)
 - 붙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참조
- 지정기간 : 2018. 5. 23.~2018. 5. 31.
- 포획량 : 새조개 13.87톤 이하
- 포획·채취 방법 : 양식장형망선 6척
- 포획·채취 어업인 : 여수시 관리수면관리위원회 사전승인 받은 자

□ 지정조건

-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·이용자는 지정내용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.
-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자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정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.
- 지정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,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.
-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자는 제 3자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, 어업분쟁을 해소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·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한 다음의 협의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.

- 여수시는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시행, 보상청구 금지, 어업 분쟁 자체 해결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
-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준설사업(2018. 3.~2018. 12.)의 준설토 배사관 사업에 따른 피해발생시 어떠한 민원 및 보상도 요구할 수 없음
-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상 필요하거나 협의 조건을 위반시 여수시에서는 본 승인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배상 요구를 할 수 없음
- 동 수산자원관리수면은 항로와 부두가 인접하고 있어 채취선이 항로를 회단하거나 채취 중 항로를 침범하여 선박, 역무선, 해상장비(준설선, 토운선, 예선 등)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, 작업시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 이탈을 방지하고, 통항선박과 교신이 가능한 감시선과 안전지도선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항계수역을 통항하는 대형선박의 항주파에 따른 소형선박 전복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함
-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분쟁은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자인 여수시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
- 채취 작업 전에 어선명단, 작업일정, 비상연락망 등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
- 안전지도선은 선박식별을 위한 자동식별장치(AIS) 및 교신을 위한 무선통신장비(VHF)를 설치하고 VHF CH67를 상시 청수하여 여수

항해상교통관제센터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, 항로횡단 또는 작업 선박이동시에는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유선(061-840-2552) 또는 무선(VHF CH67)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

- 야간(일몰 후~일출 전)에는 채취 어선 등 관련 선박의 항행을 절대 금하여야 함
 - 어로구역 및 작업선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고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함
 - 협의구역에서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행위 시 이미 설치된 항로 표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동 해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산자원 관리 해역에 항로표지시설(형상, 등색, 등질 등을 주변 국유표지와 다르게 설치)을 설치하여야 함
 -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,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하여야 함
 - 광양만의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 채취 작업시 불가사리 퇴치·제거도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위원회를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(각종 서류의 작성·비치 등)와 제42조제2항를 준수하여야 한다.
 - 여수시에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사항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, 해양경비안전서 등 관계기관과 인근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수면의 위치와 구역도

울촌면 송도어촌계

전남여수시 수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 제

호

축척 : 1/25,000

1. 어업의 종류 : 수산자원 관리수면
2. 어업방법 : 바닥식(패류)형망, 잠수기
3. 수면의 위치 :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송도리 송도 지선
4. 기점 및 각점 :

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: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송도리 송도 (X=153 896. 4830 Y=257 329. 2770)

육상기점(여수시 울촌면 송도리 송도 (X=153 896. 4830 Y=257 329. 2770)

(가) : 137도 2,101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 (나) : 138도 2,459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

(다) : 139도 2,596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 (라) : 141도 2,548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

5. 수면의 구역 : 아래 도면에서 (가)(나)(다)(라)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(차면적 : 54,400 m²)



WGS-84 좌표

부호	N (X)	E (Y)
가	34° 51' 55.350"	127° 38' 33.000"
	152 347 9790	258 748. 9800
나	34° 51' 46.200"	127° 38' 41.750"
	152 067. 4320	258 973. 0430
다	34° 51' 41.209"	127° 38' 42.945"
	151 913. 8210	259 004. 3870
라	34° 51' 40.620"	127° 38' 39.075"
	151 895. 0380	258 906. 2020

부호	거리(M)
가-나	359m
나-다	157m
다-라	100m
라-가	479m

청우기술 (주)

국토교통부, 국토지리정보원등록업체
 연안조사 측량업 등록(제 01-2012 호)
 여수연락처: 전남 여수시 여서1로 95-1
 H.P 010-4602-3889 FAX:(061)662-8967
 본사 : (02) 453-7055~6 FAX:(02)453-7098
 측량및지형공간정보특급기술자 한상수
 (등록번호 : 60018765)



2018. 05. 08

2018년 「여수형 마을기업」 재공모 공고

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2018년 「여수형 마을기업」 육성 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 공고합니다.

2018. 5. 21.

여 수 시 장

1. 사 업 명 : 2018년도 「여수형 마을기업」 육성 지원
2. 사업기간 : 2018. 6. ~ 2018. 12.
3. 사 업 비 : 60백만원(시비)
4. 사 업 량 : 3개 기업(기업당 20백만원 한도)
5. 신청대상 : 마을기업 창업 준비 단체 및 기업
 - 2018년 신규 마을기업(행안부형, 전남형 예비)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
 - 2019년 신규 마을기업(행안부형, 전남형 예비) 준비 중인 마을공동체
6. 사업선정 :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선정
 -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형 주민 공동체 사업
 - 지역특산물 및 자연자원 활용사업, 자연 생태관광 사업, 전통시장·상가 활성화 사업 등

7. 마을기업 요건(신청자격)

-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(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,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)
- 마을기업 5명 이상이 출자하고, 6인 이상 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%를 넘어야 함.
* 5인인 경우 5인 모두 주민,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.
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% 미만이어야 하며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% 미만이어야 함.
- 여수형 마을기업 보조금의 20% 이상을 자부담 해야함.
- 마을기업은 지역(마을)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.
- 기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의거 기업성,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을 갖춘 기업 등

8. 선정방법 : 여수시 마을기업 육성 심사위원회 선정

9. 지원내용 : 교육, 컨설팅, 상품개발, 시설비 등(인건비 제외)

- 지원액 : 1개 마을기업 당 20백만원 지원

10. 신청절차



11. 신청서 접수 및 추진일정

- 접수기간 : 2018. 5. 23.(수)~2018. 6. 8.(금)
- 접수처 : 여수시 일자리정책관실 지역공동체팀
(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, 여수시청 일자리정책관실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, 우편·택배·인터넷 접수 불가)
- 심사 및 선정 : 접수기업에 한하여 별도 통보

※ 중복지원 제한 안내

-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(행안부), 사회적기업(고용부), 농촌공동체회사(농림부)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
- 다만, R&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『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』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함
- 마을기업의 정체성,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(1차년 또는 1·2차년 최종지원 종료) 2년 경과 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

*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 등

12. 신청서식

- 가. 여수형 마을기업사업 신청서 【서식 1】
- 나. 여수형 마을기업사업 계획서 【서식 2】
- 다. 여수형 마을기업 회원명단 【서식 3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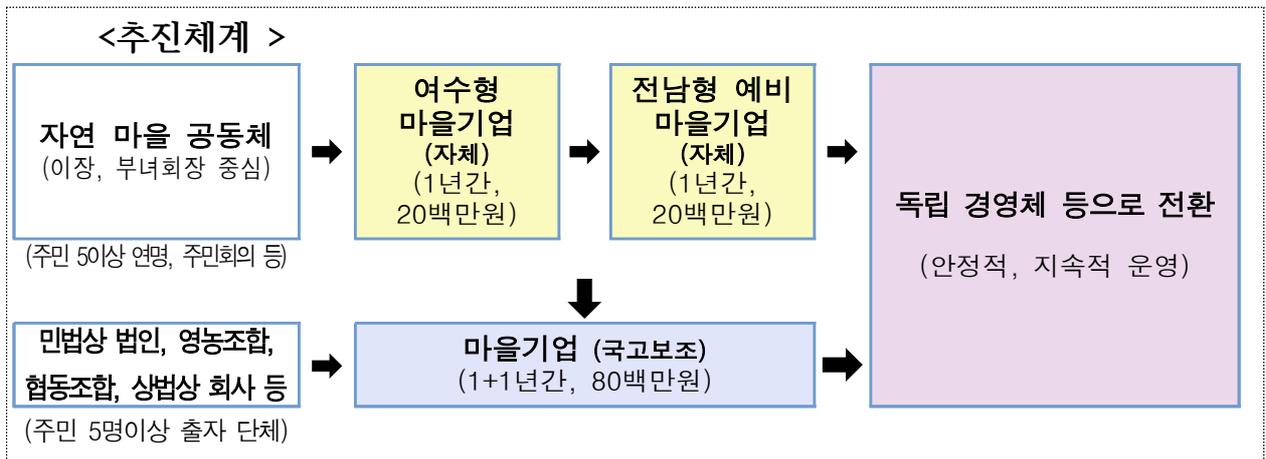
○ 신청시 제출 서류

- ①사업신청서(서식1), ②사업계획서(서식2), ③마을기업회원 명단(서식3),
- ④법인등기부등본(제출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), ⑤정관,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,
- ⑦법인 명의의 통장(자부담내역정리)
-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, 인허가 증명서 사본,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(계약기간 명시) 사본,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

13. 문 의 처 : 여수시 일자리정책관실 ☎ (061)659-3598

◆ 여수형 마을기업이란 ?

「여수형 마을기업」 사업은 여수시가 지역공동체의 「마을기업 사업」을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주민들간 공감대 형성, 마을기업 설립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



여수형 마을기업 사업계획서

1. 신청사업명 :

2. 사업 필요성

-
-

3. 사업개요

- 추진주체 :
 -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
(예> 귀농인이 80%,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)
- 사업내용 : 공공성,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
 -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(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) 내용 기재
(예> 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·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)
 -
-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: 누구인지, 어떠한 일자리인지,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
- 수익금 활용계획 : 수익금의 몇 %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, 지역사회 공헌 방안(금액환산)이 반드시 포함될 것

4. 기대효과

-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
-
-

5. 예산 계획

○ 예산 총괄

세부사업명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비고 (산출근거)
		계	보조금	자부담	
계					

○ 비목별 예산 총괄

비목		사업비(천원)			내역	비고 (산출근거)	
		계	보조금	자부담			
경상 경비	인건비				*인건비		
	일반 운영비					홍보비	
						임차비	
						강사비	
						회의참석비	
						연료비	
						시설장비유지비	
						국내여비	
	*기타운영비						
재료비				재료비			
경상경비 소계							
자본 경비	물건비 (물품구입비)						
	시설비 (공사 및 시설비)						
자본경비 소계							
합계							

○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*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

1. A 사업

세부사업 내용	1) 필요성 2) 추진내용 3)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
신청금액 산출근거	
기대효과	
추진일정	1)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

2. B 사업

세부사업 내용	1) 필요성 2) 추진내용 3)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
신청금액 산출근거	
기대효과	
추진일정	1)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

6.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(2018년~2020년)

※ 해당 계획은 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할 것

○ 2018년도 (작성예)

구분	세부항목		금액추계	비고 (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)	
수입	매출	제품 1(a)			
		제품 2(b)			
		서비스 1(c)			
		기타사업(d)			
	매출합계(A) (A= a+b+c+d)				
지출	매출 원가 (인건비제외)	재료비 등		제조업	원가율: %
		외주가공비		제조업	
		상품매출원가		단순유통판매업	
	일반 비용	인건비(상근)			
		인건비(비상근)			
		보험료 등			
		감가상각비		장비, 차량,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%	
		개발비 등			
		수도광열통신비			
		세금등			
		임차료			
		광고선전비			
	기타				
	총지출 (B)				
순이익(C), (C=A-B)					

○ 2019년도 (작성예)

구분	세부항목		금액추계	비고 (단가×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)	
수입	매출	제품 1(a)			
		제품 2(b)			
		서비스 1(c)			
		기타사업(d)			
	매출합계(A) (A= a+b+c+d)				
지출	매출 원가 (인건비제외)	재료비 등		제조업	원가율: %
		외주가공비		제조업	
		상품매출원가		단순유통판매업	
	일반 비용	인건비(상근)			
		인건비(비상근)			
		보험료 등			
		감가상각비		장비, 차량,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%	
		개발비 등			
		수도광열통신비			
		세금등			
		임차료			
		광고선전비			
		기타			
	총지출 (B)				
순이익(C), (C=A-B)					

○ 2020년도 (작성예)

구분	세부항목		금액추계	비고 (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)	
수입	매출	제품 1(a)			
		제품 2(b)			
		서비스 1(c)			
		기타사업(d)			
	매출합계(A) (A= a+b+c+d)				
지출	매출 원가 (인건비제외)	재료비 등		제조업	원가율: %
		외주가공비		제조업	
		상품매출원가		단순유통판매업	
	일반 비용	인건비(상근)			
		인건비(비상근)			
		보험료 등			
		감가상각비		장비, 차량,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%	
		개발비 등			
		수도광열통신비			
		세금등			
		임차료			
		광고선전비			
		기타			
	총지출 (B)				
순이익(C), (C=A-B)					

7. 마을기업의 특성

○ 홍보·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

- 예> 국토마트에 연 3,000개 납품 계약,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

○ 사업장 위치도(관련사진)

--	--

【서식 3】

여수형 마을기업 회원명단									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	출자금액 (원)	역할 (업무)	대표자 와의 관계	정보 제공 동의 여부	사업 계획 동의 여부
1								○	친필 서명
2								○	친필 서명
3								○	친필 서명
4								○	친필 서명
5									친필 서명
6									친필 서명
7									친필 서명
8									친필 서명
9									친필 서명
10									친필 서명
합계									

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, 출자금액,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.

2018. . .

신청자(법인 또는 단체) 대표자 :

(인 또는 서명)